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7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여성가족부는 생활체감형 정책(법령 및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)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등에 개선 권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성차별적 용어인 “미망인”을 “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”로 용어 변경(안 제13조제2항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5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24.5.14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**미망인이**”를 “**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**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<u>미망인</u>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에 불구하고 1,000분의 1.5로 한다.</p>	<p>제13조(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  
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재정관리국 재산세과 김주희 (☎ 02-3153-8715)